

국제 ODA 동향

(2006. 5)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Page]

- [일본의 ODA 평가 현황 및 시사점](#) [2]
 - ◆ 유상원조가 원조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일본의 ODA 평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ODA 평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조망

주요토픽

- [2005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16]
 - ◆ OECD에 통보된 2005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실적의 주요 특징을 지역별, 국가별, 부문별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

단 신

- [제97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내용](#) [27]
 - ◆ 2006년 4월에 개최된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
- [일본 엔차관의 지원조건 개선내용](#) [30]
 - ◆ 일본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엔차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된 엔차관 지원조건의 주요 내용을 제시

자 료

- [2005년 ODA통계\(잠정치\)의 주요 내용](#) [34]
 - ◆ 2006년 4월 DAC가 발표한 2005년도 ODA통계(우리나라 포함)
- [원조사업의 OECD에 대한 통보의 종류](#) [38]
 - ◆ OECD의 협약 또는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통보의 종류

이슈분석

일본의 ODA 평가 현황 및 시사점

I. 국제사회의 ODA 평가 동향

1. 행정분야에서 평가제도가 태동

□ '60년대말, 정부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최초의 평가 실시

- 미국연방회계검사원(US GAO¹⁾)이 '60년대 말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개시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평가 시초로 인식
 - 동 프로그램 평가는 정부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 확보를 목적으로 유효성, 목표 달성도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70년대, 행정관리의 수단으로 평가 목적이 확대

- '70년대 들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지속되자 정부 정책의 품질관리 및 비용절감과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 목적이 확대
- 당시 ODA 평가는 자국의 행정평가의 일환이었음에 따라 개발원조 실시 프로세스와 연계 없이 별도로 실시

2. ODA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등장

□ '80년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평가²⁾ 논의가 활성화

- '81년 DAC에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체³⁾ 설치를 계기로 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1)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2) OECD DAC는 평가를 「현재 실시 중, 혹은 이미 종료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계획,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평정」으로 정의

3) 현재의 개발평가네트워크(Development Evaluation Network)에 해당하는 「Evaluation Correspondent Group」 설치

○ 또한, DAC는 ODA 평가와 원조정책의 수립 및 실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평가의 방법과 절차(‘85년)」를 발표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 ‘평가의 주목적은 개발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고 정의하여 평가를 ODA 시스템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

- 이러한 DAC의 움직임은 행정분야의 성과관리이론의 일종인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에서 큰 영향을 받음

* 신공공관리는 ‘80년대 영국 및 북유럽에서 유행한 이론으로 시장기능과 경쟁원리의 도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경영정보 공개를 표방하면서 책임의 명확화, 성과에 의한 관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음

□ 또한, ‘90년대 주요 원조공여국의 재정사정 악화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가 부상

○ ‘90년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혁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중시관리(RBM : Results Based Management)라는 행정관리 수단이 도입

- RBM은 실적이나 결과(산출, 성과, 영향을 포함)의 측정을 통해 설정된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행정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행정활동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법임에 따라 행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

• RBM에서는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이라고 하는 논리의 흐름으로 정책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행정활동의 목표와 그 달성도 측정을 위한 지표가 설정되며, 이러한 측정지표에 근거하여 성과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 짐

□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 또는 섹터별 ‘포괄적인 개발접근법’*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ODA 평가대상도 개별 프로젝트에서 국가 또는 분야별 개발계획으로 확대

* DAC 신개발전략⁴⁾, 세계은행의 포괄적 개발체제(CDF), UN 천년개발계획(MDG) 등

4) 1996년 5월 DAC 34차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채택된 것으로 원제는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AC는 신개발전략에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IDG)*'를 설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 평가지표를 설정한 각 목표에 대해 원조 공여국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

* 경제적 복지, 사회적 개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재생

- 또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포괄적 개발체제(CDF)에서도 모니터링·평가가 개발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개발원조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

- '98년 WB 및 IMF는 수원국이 주체가 된 보다 통합된 어프로치에 의한 개발원조를 위한 「포괄적 개발체제(CDF)」를 제안하고 CDF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곤 경감전략계획(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의 실시를 결정
- PRSP는 「수원국 중시, 결과 중시, 포괄성, 파트너십 중시, 장기적 관점」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의 실시를 위해 「참가형 프로세스,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모니터링·평가」라는 4개의 기본 프로세스를 주창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각 원조국 또는 원조기관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외에 국별 원조계획이나 분야별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

II. 일본 ODA 평가의 역사

1. ODA 평가 도입기('70년대 ~ '80년대)

- '75년 해외경제협력기금(現 JBIC)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
 - 1981년에는 외무성이, 1982년에는 국제협력사업단(現 JICA)이 각각 사후평가를 개시하여 외무성과 실시기관에 의한 ODA 평가체제가 개시
- 초기 평가의 목적은 개별 프로젝트의 관리지원
 - OECD DAC에서의 논의 및 평가 선도국인 미국의 영향으로 사후평가 도입 이후 80년대까지 안전의 관리가 중시

- 당시 외무성 경제협력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는 평가계획 및 방법의 결정, 조사의 실시, 내부관계자 및 원조수혜국정부에 대한 **평가결과의 Feedback**, 담당부처에 의한 follow-up으로 진행

2. ODA 평가목적 전환기('90년대)

- '80년대 일본의 ODA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ODA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을 계기로 '90년대에는 종전의 「ODA의 관리 지원」외에 「**설명책임의 확보**」라는 ODA 평가목적이 추가
- 평가기능 측면에서도 종전의 피드백 기능 외에 점차 **설명책임의 관점**에서 ODA의 효과를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능이 요청
- 외무성은 '97년부터 홈 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평가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홈 페이지에 공개

3. ODA 평가의 확충기(2000년대)

- 평가 실시시기의 다양화
 - ODA의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적인 ODA 성과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사전 또는 중간 단계에서 계획이나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 필요성 제기
 -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의 사적 자문기구인 평가검토회가 「ODA 평가체제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2000년)」 및 「ODA 평가연구회보고서(2001년)」 발표하면서 '사전 및 중간 단계에 대한 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는 2003년 신 ODA헌장에 '사전부터 중간, 사후까지 일관된 평가 실시'가 규정화되는 계기가 됨
- 평가대상의 확대
 - 국제원조사회는 원조국의 재정상황 악화 및 원조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원조액이 감소된 「**원조피로**」를 겪게 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90년대 후반부터 효율적·효과적 ODA 실시를 위해 종전의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난 원조 전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법에 주목

- 1990년대 후반의 DAC을 중심으로 한 SWAp(Sector Wide Approaches) 논의, 세계은행의 CDF 및 PRS 도입 등에 따라 모니터링과 평가를 포괄적인 원조전략과 연계하는 관리메커니즘이 등장
- 일본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신 ODA 헌장('03년)을 통해 평가대상을 개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섹터별, 국별, 과제별 원조계획으로 확대

□ 평가자의 다양화

- 종래의 ODA 평가는 외무성이나 실시기관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 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ODA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ODA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가 도입
- 2002년에 제출된 제2차 「ODA개혁간담회 보고서」 및 「외무성 개혁을 위한 변화모임 보고서」에서 제3자에 의한 평가, 수원국 정부·기관에 의한 평가, 다른 원조공여국과의 합동평가를 제안

III. 일본의 ODA 평가 현황

1. 실시체제

□ 외무성과 실시기관의 역할분담

- 일본의 ODA 평가⁵⁾는 주로 외무성과 실시기관인 JBIC 및 JICA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외무성과 실시기관은 각각의 평가대상을 구별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
- 외무성은 일본 ODA 전체를 총괄·조정⁶⁾하는 입장에서 ODA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JBIC이나 JICA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⁷⁾
 - 정책차원(policy level)의 평가는 ODA의 기본정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ODA 중기정책, 국별 및 중점과제별 원조정책 등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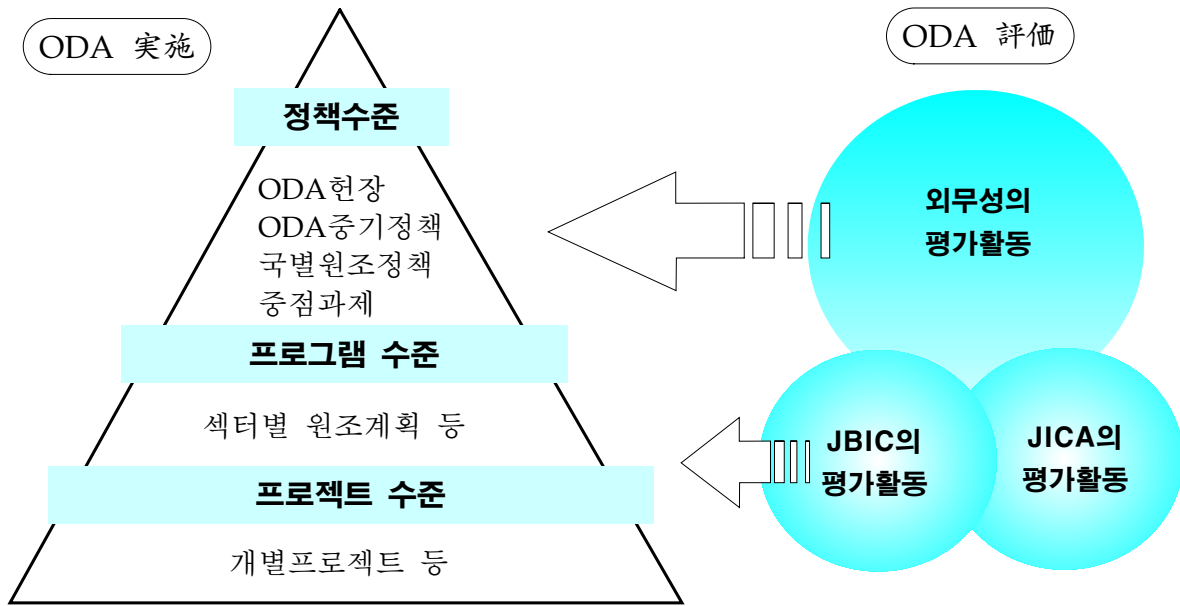
5) 다른 ODA 관계부처(재무성, 경제산업성 등)도 '정책평가법'에 따라 ODA 평가를 각각 실시

6) 「中央部處等改革基本法」(1998년)에 따라 외무성은 ODA 관계부처를 구성원으로 하는 「ODA평가 연락회의」 개최하여 각 부처의 ODA평가결과의 정리 등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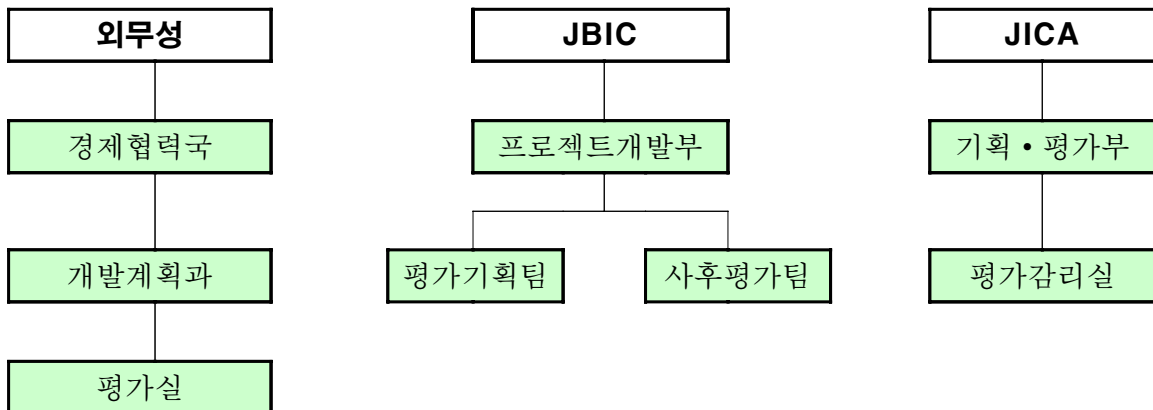
7) 실시기관(JICA, JBIC)이 수립하는 '국별 원조실시계획'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로 분류

-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복수의 프로젝트 집합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 등 개개의 활동을 대상

일본의 평가 실시체제와 평가대상



각 기관의 평가관계부서 조직도



2. 평가의 목적 및 기능

□ 평가의 목적

○ ODA의 관리지원

ODA 활동을 검증하여 그 결과로 얻은 교훈을 ODA 정책 책정 및 실시 과정에 피드백하는 것으로써 ODA의 관리를 지원함과 함께 ODA의 질 향상에 기여

○ 설명책임

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설명 책임을 완수함과 함께 ODA의 투명성을 높여 ODA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가를 촉진

□ 평가의 기능

○ ODA의 관리지원이라는 목적에서는 정책수립담당자나 ODA 실시자가 ODA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장래의 정책수립이나 실시에 활용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 기능을 제공

○ 또한, 설명책임의 관점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 이러한 피드백 기능과 정보제공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사전·중간·사후의 각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및 공표

-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는 ODA 정책수립단계에서 실시되는 평가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취사선택과 관련되는 정보의 제공, 목표 및 목표달성 측정지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 부문의 경우 측정지표 미설정으로 사전평가 미실시

- 중간평가(mid-term evaluation)는 ODA 실시상황을 타당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중간시점에서의 목표달성도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ODA의 장기적인 효과가 아닌 **실시상황에 대한 파악이 중심**이 되나, 정책 부문의 경우 사전평가의 경우와 같이 측정지표 미설정으로 중간평가 미실시

-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는 통상 ODA 종료 후 2~3년 이후에 실시되며, 목적, 과정, 목표달성도, 효과 등의 관점에서 평가가 실시
- 평가결과는 「ODA 평가 내부검토회의」 보고 및 대응방안 수립 이후 일본측 및 수원국의 ODA 실시기관에 피드백

일본의 ODA 평가 종류

평가 차원	실시기관	평가명칭	평가대상	평가지기
정 책	외무성	국별평가	국별원조계획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중점과제별평가	중점과제별원조정책	
프로그램	외무성	섹터별 평가	1개국 1개 섹터에 대한 원조활동 전반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원조형태별 평가*	원조형태(엔차관, 무상 등 원조형태)	
	JICA	국별사업평가	특정 대상국에 대한 프로젝트 집합체	
		특정테마평가	특정 과제 또는 사업형태	
JBIC	테마평가	중점지역, 중점분야 등		
프로젝트	JBIC	프로젝트평가	개별 프로젝트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JICA	개별안전평가	개별 프로젝트	
	외무성	사업평가**	10억엔 이상의 무상 프로젝트 150억엔 이상의 엔차관 프로젝트 승인 5년 이후 대출개시 미착수 안전 승인 10년 이후 대출실행 미완료 안전	

* 지원방식의 현황을 확인하여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전, 중간, 사후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

** '정책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외무성의 평가(JBIC 및 JICA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평가)

3. 평가 기준

□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제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경우도 명확한 평가기준은 없는 상태
- 외무성은 DAC의 평가기준(5개 항목)⁸⁾ 및 일본의 원조체제를 감안하여 「목적의 타당성, 결과의 효과성,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에 적용

8) DAC는 '91년 발표한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ODA의 평가기준으로 「목적의 타당성(relevance), 결과의 효과성(effectiveness, 목적달성도), 영향(impact), 효율성(efficiency), 개발효과 지속성(sustainability)」을 제시

일본의 ODA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

● **목적의 타당성**

목적의 타당성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일본의 상위정책(ODA 현장, 중기계획, 국별 원조계획)이나 수원국의 needs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검증

● **결과의 효과성**

결과의 유효성에는 당초 예정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검증. 다만, 일본의 원조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산출물(output)이나 성과(outcome)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 **프로세스의 적절성**

프로세스의 적절성에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타당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취해지고 있는가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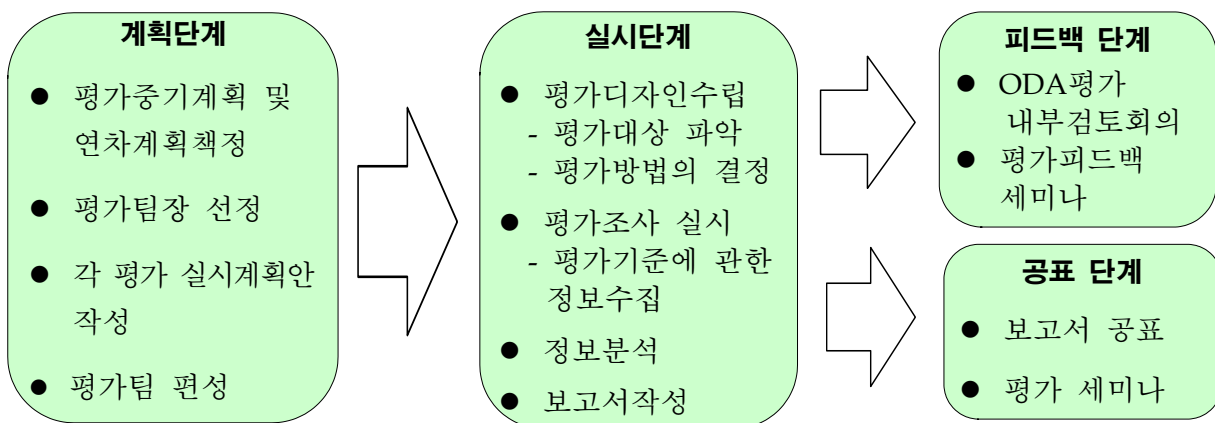
□ 프로젝트의 평가기준

- DAC의 평가기준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DAC 기준을 반드시 하나의 세트에 이용하지는 않으며,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으로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DAC 평가기준 이외의 기준도 적용 가능

4. 실시절차

- 일본의 ODA 평가는 크게 계획, 실시, 피드백 및 공표 단계를 거쳐 시행

일본의 ODA 평가 흐름



- 평가 결과는 외무성이 「ODA 평가 내부검토회의」 보고하여 대응 방안 수립 후 일본내 관계자 및 수원국 정부 및 실시기관에 피드백
 - 외무성은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평가보고서, 평가연차 보고서('82년부터 출간)를 발간하며, 책자 발간과 별도로 외무성의 웹사이트에 평가결과 공개
- 평가 워크숍 개최
 - 수원국과 협력강화 및 평가역량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일본 및 수원국에서 평가 워크숍 개최
 - 2002년(FY2001)~2004년(FY2003)까지는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2005년(FY2004)은 태국에서 개최

IV. 주요 이슈 및 시사점

1. 일본에서의 평가관련 주요 이슈

- ODA 평가기능의 양립성에 대한 논란
 - 피드백 기능을 중시하는 경우 평가는 정책 결정자에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국민에 대한 설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가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ODA 평가의 활용이 곤란
 - 이와 관련하여 관리 목적의 평가와 설명책임을 목적으로 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전망
- 정책입안과 사전평가의 구분 불확실
 - 일본의 ODA 평가는 사전에서부터 중간, 사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평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미정립 상태
 - 사전평가를 '정책 목표의 사전설정'과 '정책 결정자의 정책 취사·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이해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대립

- 즉,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구분이 어려워 평가자와 정책 입안자의 권한이 경합하는 문제 발생

□ 평가방법의 미정립

- 일본도 DAC 등 국제사회의 ODA 평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섹터나 국별 지원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막 시작된 단계여서 각 원조공여국 및 원조시행기관 모두 방법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외무성은 섹터나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을 목적의 타당성, 결과의 유효성, 프로세스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어려워 사후평가 시 그 달성도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

2. 우리나라 ODA 평가를 위한 시사점

□ ODA 헌장 등 ODA 정책방향 확정을 통한 평가 기준의 명확화 필요

-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본에서의 ODA 평가관련 논의결과는 ODA 헌장을 통한 평가기준의 명확화 및 동 헌장의 실행계획인 중기계획 및 국별원조계획에 의거한 평가실시로 요약
- 이와 같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ODA 헌장 및 중기계획과 같이 원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정책방향의 수립을 통한 평가체제의 정립이 먼저 요구됨

□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별화 필요

- ODA 평가는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책임의 확보를 위한 평가로 크게 대별됨에 따라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에서도 차별화가 필요

- ODA 정책의 관리수단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ODA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 ODA 활동의 교훈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피드백 등의 관점에서 평가 필요
- 반면, ODA 정책의 설명책임 확보를 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ODA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평가방법이 설계되어야 함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ODA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 ODA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환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는 등 일반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는 분야임
- 일본의 예에서 보듯 DAC의 평가기준은 유용한 참고기준의 하나일 뿐 정책평가 등에서 활용하는 평가기준은 각국의 고유한 원조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원조환경, 특히 호혜적 경제협력 관점에서 실시되는 유상원조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ODA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 이와 더불어, ODA 평가 담당부처, 실시기관, 외부 평가전문가 등 평가 주체의 평가능력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 평가인프라 구축 계획의 수립이 요청

- 붙임 : 1. 일본의 국별원조계획 목표체계도(예시)
2. 일본의 국별 원조계획 평가골격(예시)

- 자 료 : 1. 레ファレン스, '開発援助における結果重視マネジメントーわが国のODA評価への示唆', 2005
2. OECD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3. 일본 외무성, 'ODA 評価ガイドライン', 第2版, 2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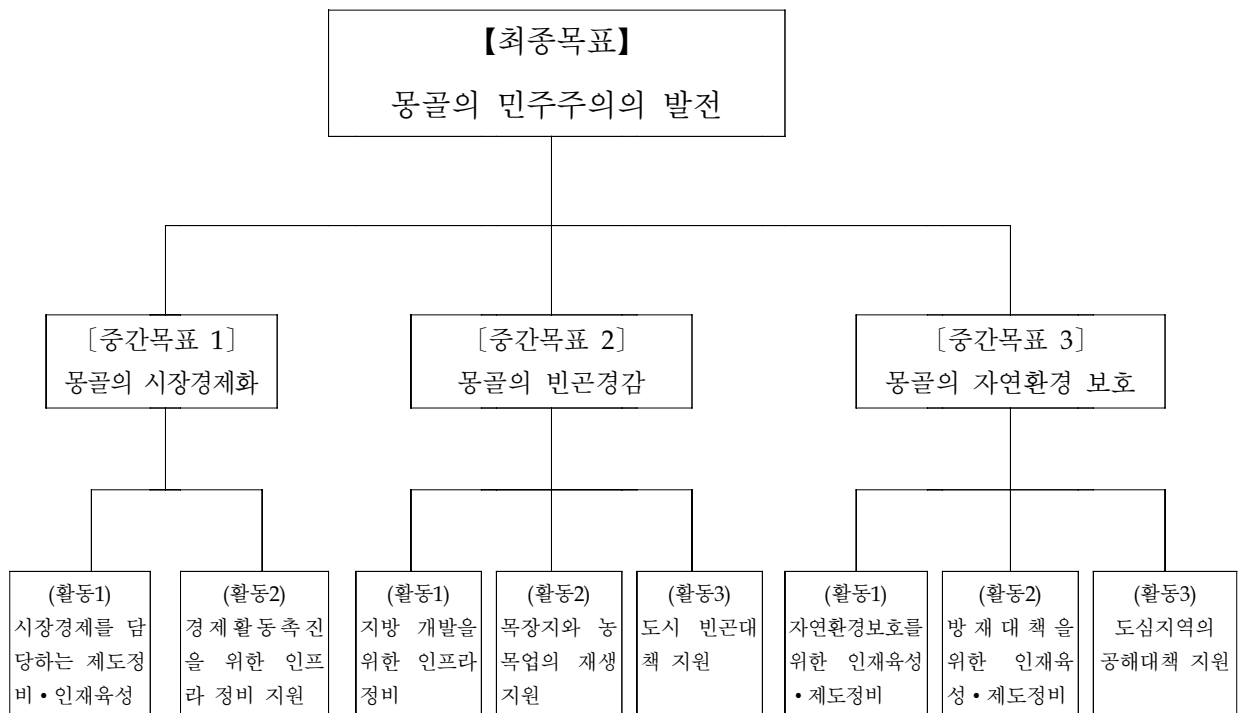
작 성 : 오 용 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붙임 1)

일본의 국별원조계획 목표체계도(예시)

- 정책목표 체계도는 평가의 대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개별 프로젝트까지 기재
- 한편, 국별 원조계획평가에서는 특정 수원국에 대한 ODA 활동 전반이 평가 대상이 되나, 평가 대상기간을 설정하여 대상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중간평가는 국별원조계획 책정 이후 4년째에 실시하기 때문에 3년간의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사후평가의 경우는 주로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음

국별원조계획 목표체계도(예시)



※ 각각의 원조정책(국별원조, 섹터원조, 중점과제별 원조 등)에 대해 목표체계도를 작성한 후 평가골격에 따라 평가 수행

(붙임 2)

일본의 국별 원조계획 평가골격(예시)

평가대상 : 인도국별원조방침(1997~2001)

평가의 관점	평가항목 및 기준		자료원, 수집방법
I. 국별원조방침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타당성 : 인도 국별원조방침은 그 상위개념인 ODA현장, ODA중기정책 및 인도의 개발니즈에 합치하는가? (참고) 다른 원조공여국과 일본의 국별원조방침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현장(1992년 각의결정)과의 관련 정도 : ODA 대강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 ODA중기정책과의 관련 정도 : ODA중기정책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 수원국의 개발니즈와의 관련정도 : 수원국의 개발계획 등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가?(97년~01년간의 국별원조방침과 인도의 개발계획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현장 - ODA중기정책 - 인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 - 원조회의(CG) 등의 협의자료 ●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인도정부, 다른 원조공여국
II. 국별원조방침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의 유효성 : 과거 5년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가를 투입 및 산출 기준으로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이런 산출물이 중점분야별로 주요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검증 - 인도의 주요 지표, 각 섹터별 주요 지표의 주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 지표의 동향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분야마다의 투입 및 산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원조방침에 규정된 중점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입 및 산출 실적이 있는가?(주별 데이터 참조)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분야별 주요지표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산출이 중점분야의 주요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백서, 국별데이터북 - JBIC, JICA의 연차보고서 - 아시아경제연구소 통계자료 - 국제기구 등의 통계 자료 ●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정부, 외무성, JBIC, JICA

I. 및 II.의 결과 필요한 경우 아래를 검증

III. 국별원조방침의 프로세스 (방침책정 및 실시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원조방침의 책정 및 실시 프로세스에 일본 ODA의 상위정책(ODA현장, ODA 중기정책)에 명기된 유의사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 상대국의 니즈를 파악하여 국별원조방침을 적절하게 책정·실시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정프로세스에 대한 협의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국, 일본정부내, 실시기관, NGO를 포함한 민간, 다른 원조공여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이 이행되고 있는가? ● 실시프로세스에 대한 연계·협의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내의 연계·협의, 실시기관과의 연계·협의, NGO를 포함한 민간과의 연계·협의, 다른 원조공여국과의 연계·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 검증시스템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원조방침이 실시상황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회의의 등 협의자료 ●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정부, 외무성, JBIC, JICA, 기타 원조공여국
------------------------------------	---	--	---

※ 상기 평가골격(framework)은 국별 원조계획평가, 섹터평가, 중점과제평가 등 주요 원조정책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됨

목차보기

주요토픽

2005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요약】

-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참가국의 2005년도 원조사업 통보 결과를 보면,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57억 SDR을 기록(이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48.3% 증가한 41억 SDR을 차지)
 -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55억 SDR로 전년대비 75% 증가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의해 처음으로 사전통보된 2005년도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총 60건, 37억 SDR을 기록

I.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consensus notification)

1. 수출신용협약의 개요

□ 수출신용협약의 의의

- '수출신용협약(Agre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공적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가 초래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1978년 4월 참가국 합의하에 제정되었음
 - 동 협약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 타이드 원조에 관한 규정, 통보 및 협의 절차, 부문별 양해⁹⁾ 등으로 구성

□ 통보 대상

- 수출신용협약의 통보 대상이 되는 원조는 무역과 관련된(trade-related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tied or untied aid)임
 - 타이드 원조는 지원금액 및 양허성 수준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통보 대상이 되며, 언타이드 원조는 사전통보 대상에만 해당 ⇒ 상세내용은 【자료 2】 참조

9) 선박·핵발전소·민간항공기·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프로젝트 등 특정부문에 대한 양해(sector understanding)로서 수출신용협약의 첨부자료를 구성

2. 통보 내용

가. 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 2005년에 통보된 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57억 SDR**, 통보건수는 4.2% 증가한 299건을 기록
 - 전년대비 증가분 21억 SDR은 양허성 수준 80% 이상의 타이드 원조 증가(+11억 SDR),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 증가(+14억 SDR), 최빈국(LDC)앞 타이드 원조 감소(△3억 SDR) 등에 기인
 - 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23억 SDR(2002년) → 24억 SDR(2003년) → 36억 SDR(2004년) → 57억 SDR(2005년)
- 통보된 타이드 원조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¹⁰⁾**는 전년대비 48.3% 증가한 **41억 SDR**을 차지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166건으로 전년대비 7.8% 증가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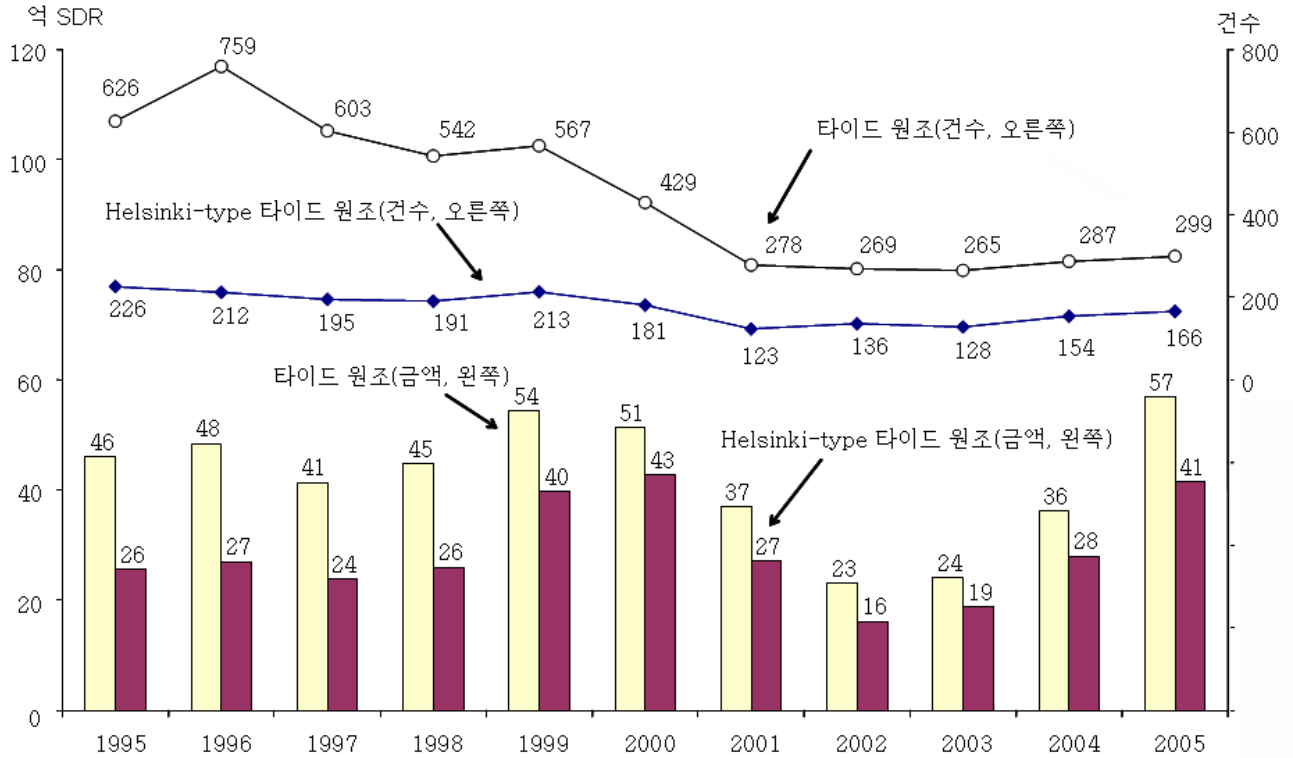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SDR)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누 계*
통보대상 원조(all aid)	5,787	6,775	11,180	n.a.
- 언타이드 원조	3,370	3,144	5,493	n.a.
= 타이드 원조(tied aid)	2,418	3,631	5,687	58,021
- 소액 타이드 원조(2백만 SDR 미만)	116	114	76	2,714
- 최빈국에 대한 타이드 원조	129	417	109	4,703
- 양허성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303	305	1,356	11,176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	1,870	2,796	4,146	39,429

* 1992. 3. ~ 2005. 12

10) 상업성이 있는 사업과 고소득국가에 대한 타이드 원조 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92년에 도입된 Helsinki package의 규제대상이 되는 2백만 SDR 이상, 양허성 수준 35~80%의 타이드 원조를 말함

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5)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과 스페인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제공
 - 주요 공여국은 일본(33.2%), 스페인(28.1%), 덴마크(6.8%), 프랑스(6.3%), 네덜란드(4.9%) 순이며 특히, 일본과 스페인이 크게 증가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었고, 개별국가로는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지원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집중(41.1%)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원국은 인도네시아, 알제리, 베트남, 이라크, 중국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에 집중되었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
 - 교통 부문(철도, 도로, 해상운송, 항공 등)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43.5% 증가한 22억 SDR을 기록하여 전체 실적의 51.9%를 차지

-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없는 보건, 수도, 위생,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2억 SDR을 기록하여 전체 실적의 29.6%를 차지
 - 에너지 부문(발전, 송배전 등)은 전년대비 157.6% 증가한 7.2억 SDR을 기록
- **소액차관(de minimis)¹¹⁾**은 통보 건수 및 금액에서 모두 감소 추세
- 소액차관 통보 추이 : 106.5백만 SDR(91건, 2003년) → 89.5백만 SDR(75건, 2004년) → 55.5백만 SDR(47건, 2005년)
 - '95년 이후 스페인(20.2%)이 가장 많은 소액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14.7%), 프랑스(13.2%), 네덜란드(10.8%) 등이 뒤를 이음
- **매칭(matching)** 통보 건수는 1993년부터 감소세가 시작하여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3~4건에 불과
- 1992년 Helsinki 원칙이 도입되어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칭 건수는 1993년부터 점진적인 감소세가 시작됨
 - 1995년 항공운송 부문에서의 미국에 의한 다수의 매칭통보(35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
 - 2005년 매칭 통보 건수는 4건으로 일본(2), 프랑스(1), 한국(1) 등이 통보
- **대면협의(consultation)**를 받은 사업 수도 1996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2건에 달함
- 1996년에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기준을 제시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이 마련되면서 대면협의 사례가 감소하기 시작
 - 2005년 중에 대면협의를 받은 사업은 총 2건¹²⁾으로 캐나다 사업은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프랑스 사업은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11)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2백만 SDR 미만의 소액 차관

12) 캐나다의 대 중국 난방공급사업과 프랑스의 대 몬테네그로 배전망 개보수사업 등 총 2건

나.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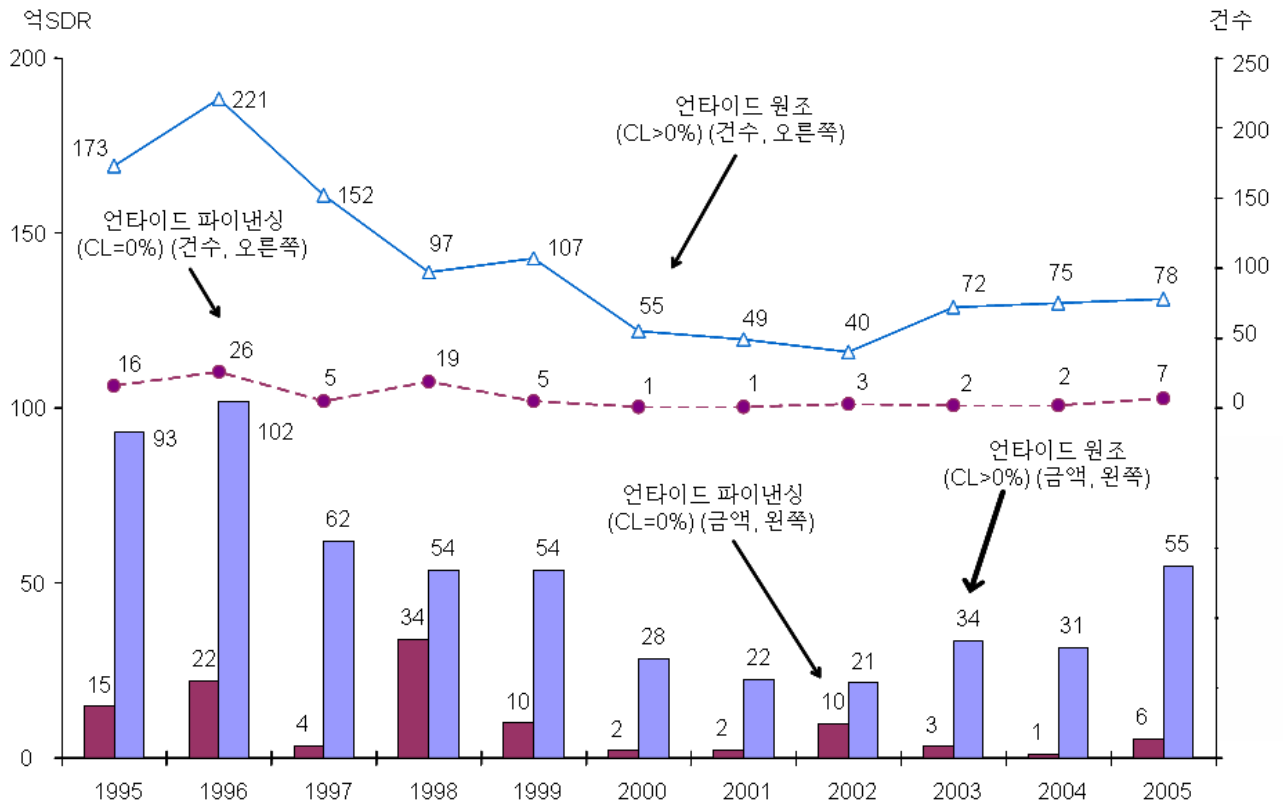
□ 2005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타이드 원조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7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통보 금액은 전년대비 74.7% 증가한 55억 SDR를 기록

※ 언타이드 파이낸싱¹³⁾은 총 7건, 6억 SDR을 기록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21억 SDR(2002년) → 34억 SDR(2003년) → 31억 SDR(2004년) → 55억 SDR(2005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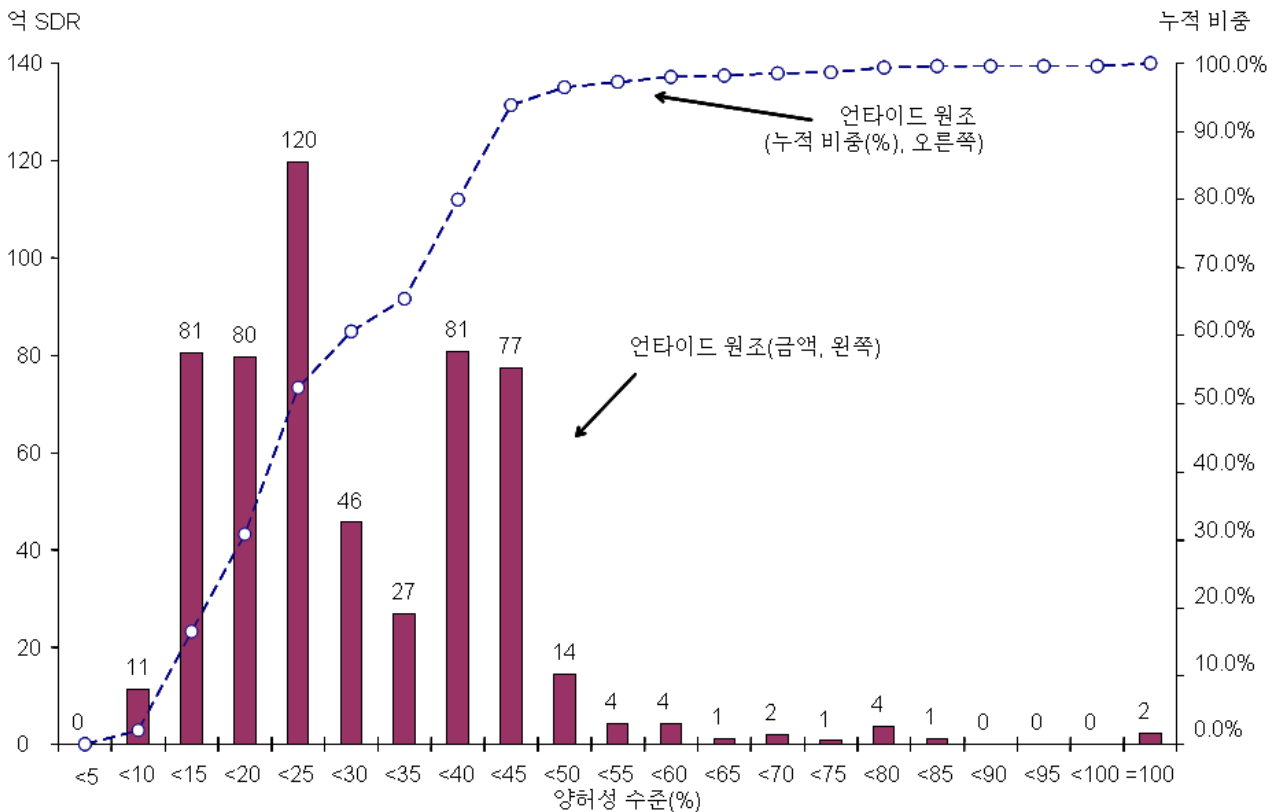


13) 언타이드 파이낸싱은 양허성 수준이 0%인 언타이드 자금지원(원조가 아님)으로 협약의 통보대상은 아니나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대상으로 언타이드 파이낸싱을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

- 2005년 언타이드 원조의 60% 이상이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35% 미만으로 지원되었으며 특히, 양허성 수준 20~25% 사이에 집중됨
- 언타이드 원조의 과거 11년간(1995~2005) 평균 양허성 수준은 27.9%
 - 동 기간 각국의 평균 양허성 수준은 스페인(49.36%), 노르웨이(43.24%), 이탈리아(42.47%), 독일(41.79%), 덴마크(32.18%), 스웨덴(27.88%), 프랑스(27.57%), 일본(26.45%) 순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 구성



* 과거 11년간(1995~2005)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의 합계금액(556억 SDR)을 대상으로 작성

□ 언타이드 원조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전체 통보금액의 약 90%를 차지

- 2005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89.5%), 독일(6.8%), 프랑스(2.0%) 순이며 특히, 일본의 통보 금액은 전년의 2배(47억 SDR)를 기록
- 일본은 과거 11년간(1995~2005) 언타이드 원조의 89.9%를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 2005년 주요 수원국은 인도(30.9%), 베트남(14.7%), 중국(13.1%), 인도네시아(8.8%) 순이며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
 - 수원국별 양허성 수준은 베트남(30.26%), 중국(27.03%), 인도네시아(25.78%), 인도(24.58%), 태국(22.0%) 순
- 언타이드 원조는 에너지 부문과 교통 부문을 주로 지원
 - 2005년 주요 지원부문은 에너지(36.0%), 수자원 및 위생(27.4%), 교통(7.3%) 순 -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103.2% 증가한 20억 SDR을 기록
 - 과거 11년간 언타이드 원조는 절반 이상이 교통 부문(30.2%)과 에너지 부문(23.6%)에 집중

【참고】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 을 적용¹⁴⁾한 모의실험¹⁵⁾ 결과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가상으로 적용해 봄
 - 언타이드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타이드化되어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언타이드 원조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참가국의 주장에 따름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주로 언타이드 원조의 낮은 양허성 수준으로 인해 과거 언타이드 원조실적의 70% 이상이 헬싱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1년간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556억 SDR) 중 395억 SDR¹⁶⁾이 헬싱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과거의 언타이드 원조를 모두 헬싱키 타이드 원칙에 맞게 지원하려고 했다면 참가국들은 언타이드 원조예산을 25% 늘렸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옴
 - 과거 11년간의 언타이드 원조금액(556억 SDR)과 언타이드 원조의 평균 CL(27.9%)을 감안할 때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grant)은 155억 SDR¹⁷⁾에 달함
 - 이를 언타이드 원조예산으로 볼 때, 헬싱키 원칙의 CE기준과 CL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조예산의 약 25%, 즉 38억 SDR¹⁸⁾의 추가 예산이 필요

II.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1. 투명성 합의의 개요

□ 투명성 합의의 의미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1월 제93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로서 2년간(2005.1~2006.12)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동 합의는 언타이드 원조신용(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사용 등을 골자로 함

□ 통보 대상

- 투명성 합의의 통보 대상은 언타이드 원조신용(Untied ODA Credits)으로 이는 주로 언타이드 차관을 말함
 - 사전 및 사후 통보대상은 5백만 SDR 이상의 원조차관과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FEED, A&E, PRTA 등)임 ⇒ 상세내용은 【자료 2】 참조

2. 통보 내용

가. 사전통보(ex ante notification) 내용

□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총 60건, 37억 SDR을 기록

- 투명성 합의가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사전통보된 것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총 7개 공여국이 참가

14)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성 기준(commercial viability)은 배제하고 적격국가 기준(country eligibility)과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minimum concessionality level)만을 적용

15) 과거 11년간(1995~2005)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실적(1,119건, 556억 SDR)을 대상으로 분석

16) 적격국가 기준(CE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51억 SDR)와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CL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344억 SDR)가 이에 해당

17) 즉, 원조예산 = 556억 SDR × 27.9% = 155억 SDR

18) CE기준에 따라 비적격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13억 SDR은 절감할 수 있으나, CL기준에 따라 최저 CL(35%)을 맞추기 위해서는 51억 SDR이 추가로 소요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30억 SDR)이고 최대 수원국은 **인도**(7억 SDR)
 - 주요 공여국은 일본(80.5%), 독일(6.4%), 프랑스(5.8%), 스페인(5.1%) 순이고, 주요 수원국은 인도(19.6%), 중국(17.9%), 인도네시아(17.7%)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1/3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 제공
 - 주요 지원부문은 에너지 부문(35.7%), 수자원 및 위생(24.1%), 교통(12.1%), 다부문(9.5%)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절반 이상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
 - 전체 사전통보 건(60건) 중 28건(20억 SDR)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27건)과 독일(1건)이 이를 모두 지원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입찰(ICB)**을 적용
 - 투명성 합의는 구매계약시 가능한 한 국제경쟁입찰(ICB)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약 90%는 ICB를 적용한 반면, ICB 적용이 어려운 9.9%는 현지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1.4%는 수의계약을 적용함

나. 사후통보(ex post notification) 일정

- 언타이드 원조신용에 대한 사후통보는 **올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사후통보는 직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수주기업, 수주국가 등 사업수주 결과를 모두 포함하며 연 1회 집계표 형식으로 일괄 제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OECD는 사후통보의 작성 양식 및 지침을 2006년 2월 중에 배포하였고 각 참가국은 동 양식에 의거 동년 8월말까지 사후통보를 완료할 예정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모두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00년 이후 감소하던 타이드 원조는 '9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였고 언타이드 원조는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
- 타이드 원조에 있어서는 **Helsinki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됨
 - '92년 Helsinki 원칙 도입과 '96년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 마련으로 매칭건수 및 대면협의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 최근 크게 늘어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유가 급등 등으로 타이드 및 언타이드 모두 발전, 송배전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 증가할 전망
- **언타이드 원조도 무역질서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상존**
 -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화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최저 양허성 수준 설정, 지원대상국 한정 등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조치 도입이 다시 거론될 수 있음
- 투명성 합의에 따른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 결과가 주목됨**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사후통보에 의해 2005년 언타이드 차관의 수주기업 관련정보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가 상세히 공개될 예정
 - 동 사후통보 결과는 향후 언타이드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타이드로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자 료 : 1. Tied Aid: 2005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2006.3
2. Untied Aid: 2005 "Shadow" Helsinki Review of Untied Notifications, 2006.3
3. 2005 Full-Year Review: Arrang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2006.2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1

제97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OECD는 제97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Participants' meeting)를 개최하고 수출신용 및 원조 관련 이슈들을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06. 4. 24 ~ 4. 26(3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이번 회의에는 26개 참가국 대표와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 참가국 : OECD 회원국(30개국) 중 멕시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참석
 - 국제기구 : WTO, EC 등

2. 주요 논의내용

- 터키에 대한 **Observer** 지위 부여
 - 터키는 '61년 이후 OECD 회원국이었음을 강조하며 자국에게 수출신용참가국회의에 대한 **Observer**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
 - EC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터키의 **Observer** 자격 취득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
 - EC는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2~3주내로 입장을 밝히기로 함
- 비회원국의 참여 확대(Outreach)
 - 무역규모 및 수출신용 규모가 큰 비회원국들이 수출신용협약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공정경쟁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38.6억 달러), 브라질(28.2억 달러), 인도(25억 달러)는 중장기 공적수출신용 규모(2004년 기준)가 세계 10위안에 위치할 만큼 성장

※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공적수출신용 규모는 38.5억 달러로 세계 8위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강대국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OECD의 제안에 동의함
 - OECD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비회원국들을 11월 정기회의에 임시 Observer로 초대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접촉하기로 함

□ 타이드/언타이드 원조 지원현황

- 2005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각각 57%, 74% 증가한 57억 SDR, 55억 SDR을 기록하며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41억 SDR(전년대비 48.3% 증가)을 차지
- 주요 참가국들은 '96년 이후 매칭 건수와 대면협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타이드 원조에 Helsinki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은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C 및 캐나다는 언타이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조규모 자체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 이행상황

- 동 투명성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통보(ex ante) 결과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총 60건, 70억 SDR(7개 공여국)이 보고 되었고 사후통보는 올해 8월말까지 일괄 제출될 예정
- 참가국들은 동 투명성 합의가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나 통보절차는 수출신용협약과 다소 중복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또한 일부 참가국들이 올해 말에 완료될 투명성 합의를 연장 또는 영구화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동 문제는 사후통보 결과를 보고 11월 개최될 차기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DAC의 개발원조 진행상황 보고

- DAC는 수출신용과 원조간의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DAC와 Joint Meeting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2005년말 DAC SLM에서 제안된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의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소규모 사업(70만 SDR 미만)도 언타이드로 제공하여야 하고 사후통보¹⁹⁾ 대상에 포함됨

3. 향후 전망

- 신흥공여국들에 대한 수출신용협약 참가 압력이 거세질 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강대국들의 무역 및 수출신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수출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Helsinki 원칙 적용은 어려울 전망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는 전체 원조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여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Helsinki 원칙 적용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는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공여국들은 동 합의가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올해 11월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
-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 개정으로 최빈국에 대한 소규모 사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됨
 - 동 권고의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므로 최빈국에 대한 소규모 사업도 언타이드로 제공하여야 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포함됨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19) 소규모 사업의 수주결과를 연1회 집계하여 보고해야 하며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보고대상기간 : 2006.7.1~2007.12.31)

단 신 2

일본 엔차관의 지원조건 개선내용

-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해 도입한 엔차관 제도를 뒷받침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엔차관 실시를 위해 **최근 엔차관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2006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 이번 지원조건 개선사항은 **최빈국 지원 강화**, **일본기술활용조건(STEP: 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제도의 평가기법 개선, 차관사업의 조기시행 촉진 등을 골자로 함
- **최빈국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
 - 일본은 MDG 달성을 위해 작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 향후 5년간 (2006~2010) 전체 ODA 규모의 100억 달러 확대,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의 2배 확대 등을 약속하고 올해 초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엔차관제도(EPISA: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²⁰⁾를 도입
 - 일본은 EPISA 시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AfDB에 대한 직접대출을 포함하여 JBIC을 통해 총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차관을 제공할 계획
 - 일본은 EPISA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리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함(개정된 지원조건은 붙임을 참조)
 - ① **최빈국(LDC)에 대한 특별 우대조건을 신설**
 - 최빈국 중에서도 빈곤국²¹⁾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가까운 0.01%의 최저금리 (Minimal Interest Rate: MIRAI)와 상환기간 4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을 적용

20) EPISA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일본의 JBIC이 AfDB를 통해 엔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서의 사업 발굴·심사·구매·감독, 차관관리, 사후평가 등은 모두 AfDB가 수행하게 됨. 또한, 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언타이드로 지원되는 제도임에 따라 국제개발기구(MDB)와의 협조용자나 향후 우리나라가 언타이드원조를 본격 도입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EPIS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ODA 동향' 2006년 1호(06. 3.)를 참고

21) 빈곤국은 파리클럽의 채무구제국 중 중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국가로 이들 국가는 일반 최빈국에 비해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장래 채무상환 능력이 우량한 것으로 이해 :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간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감비아, 수단, 세네갈, 소말리아, 탄자니아, 차드, 토고,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등 43개국

② EPSA를 통한 AfDB와의 협조융자 건에 대한 우대조건 마련

- EPSA에 의한 AfDB와의 협조융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조건이 아닌 우대조건을 적용
-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한 AfDB앞 직접대출에는 금리 0.75%, 상환기간 4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을 적용

③ IMF의 지원 프로그램 하의 수원국에 대한 지원조건 변경 근거 마련

- IMF의 조정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수원국에 대해서는 IMF가 제시하는 양허성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엔차관의 지원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함

④ 상위중소득국(UMIC)에 대한 금리는 상향 조정

- 최빈국 지원 강화로 취약해질 수 있는 JBIC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상위중소득국에 대한 금리는 최대 0.7% 포인트 인상하기로 함

□ 일본기술활용조건(STEP) 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 STEP 제도는 한시적(1999~2001)으로 운용된 타이드 조건의 '특별엔차관'의 뒤를 이어 타이드 차관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02년 7월 도입되었음
- 그러나 일본의 타이드 차관은 일본기업의 입찰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많아 수원국의 직접적인 불만 요소 중의 하나였음
 -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수원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타이드 차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TEP 제도 평가시 엔차관사업의 비용 및 품질 면에 대한 발주자 및 수주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함
 - STEP 제도 평가시 사업비용에 대한 수원국의 만족도가 반영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제가격에서의 수주를 유도하여 STEP 제도에 의한 타이드 엔차관의 확대에 기여할 전망

□ 엔차관 사업의 조기시행 촉진

- 일본은 자국의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엔차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의 조기 발현과 사업의 기한내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마련

- 2007년 1월 1일부터 상대국에 사전통보되는 신규 엔차관 사업에 대하여 차관계약의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연수(年數)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0.2%)를 부과하기로 함

붙임 : 엔차관 지원조건표(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

자 료 : 일본 JBIC, 円借款制度の改善について(2006.3.31자 보도자료)

<http://www.jbic.go.jp/autocontents/japanese/news/2006/000049/index.htm>

<http://www.jbic.go.jp/japanese/oec/standard/yenloan/index.php>

<http://www.jbic.go.jp/japanese/oec/standard/yenloan/rate2005.php>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엔차관 지원조건표(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1인당 GNI (2004)	적용 조건	금리 (%)	상환기간 (연)	거치기간 (연)	구매조건			
	LDC중 빈곤국	최저금리 (Minimal Interest Rate:"MIRAI")	0.01	40	10	엔타이드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일반조건 (General Terms)	표준	0.80	30	10	엔타이드		
			선택 1	0.75	25	7			
			선택 2	0.70	20	6			
		우대조건 (Preferential Terms)	표준	0.75	40	10	엔타이드		
			선택 1	0.65	30	10			
			선택 2	0.60	20	6			
		저소득국 (Low-Income Countries)	US\$ 825 이하	일반조건	표준	1.30	30	10	엔타이드
					선택 1	1.00	25	7	
					선택 2	0.85	20	6	
우대조건	표준			0.75	40	10	엔타이드		
	선택 1			0.65	30	10			
	선택 2			0.60	20	6			
STEP	표준			0.40	40	10	타이드		
	선택			0.30	30	10			
하위중소득국 (Lower-Middle-Income Countries)	US\$ 826 ~US\$1,575			일반조건	표준	1.50	30	10	엔타이드
					선택 1	0.90	20	6	
					선택 2	0.80	15	5	
				우대조건	표준	0.75	40	10	엔타이드
		선택 1	0.65		30	10			
		선택 2	0.60		20	6			
		STEP	표준	0.40	40	10	타이드		
			선택	0.30	30	10			
		중소득국 (Middle-Income Countries)	US\$1,576 ~US\$3,255	일반조건	표준	1.50	25	7	엔타이드
선택 1	1.05				20	6			
선택 2	0.90				15	5			
우대조건	표준			0.75	40	10	엔타이드		
	선택 1			0.65	30	10			
	선택 2			0.60	20	6			
STEP	표준			0.40	40	10	타이드		
	선택			0.30	30	10			
상위중소득국 (Upper-Middle-Income Countries)	US\$3,256 ~US\$5,685			일반조건	표준	2.30	25	7	엔타이드
		선택 1	2.20		20	6			
		선택 2	2.10		15	5			
		우대조건	표준	1.80	25	7	엔타이드		
			선택 1	1.60	20	6			
			선택 2	1.20	15	5			
프로그램 형태의 엔차관에 대한 조건 (Options for Program Type Yen Loan)		- 협조용자의 경우, ODA 차관의 양허성 수준(CL)을 유지하는 한에서 협조용자기관의 지원조건 적용가능 - IMF 프로그램 하의 수원국의 경우 IMF의 양허성 수준(CL)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엔차관의 지원조건 변경 가능							

목차보기

【자료 1】

2005년 ODA통계(잠정치)의 주요 내용

1.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05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잠정치)는 전년대비 31.4% 증가한 1,06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유럽 주요국	네덜란드	42	0.73%	51	0.82%
	덴마크	20	0.85%	21	0.81%
	영 국	79	0.36%	108	0.48%
	프랑스	85	0.41%	101	0.47%
	독 일	75	0.28%	99	0.35%
	스페인	24	0.24%	31	0.29%
EU 소계	429	0.35%	557	0.44%	
일 본	89	0.19%	131	0.28%	
미 국	197	0.17%	275	0.22%	
DAC 전체	796	0.26%	1,065	0.33%	

-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된 주요 요인은 채무구제와 쓰나미 원조 증가이며 채무구제를 위한 증여가 전년대비 400% 증가한 반면, 그 외 원조는 8.7% 증가에 그침
 - 채무구제 : DAC 회원국은 2005년 중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해 각각 140억 달러, 50억 달러 등 총 190억 달러의 채무탕감을 제공
 - 쓰나미 원조 : 2004년 12월에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DAC 회원국은 22억 달러를 제공

- ODA/GNI 비율은 0.33%로 전년대비 0.07% 포인트 증가

- 2005년 최대 공여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순이며 UN이 제시한 목표 ODA/GNI 비율(0.7%)을 달성한 공여국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 미국의 2005년 ODA는 275억 달러로 전년대비 35.6%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17%에서 0.22%로 상승
 - 채무구제를 제외하고 실적 증가의 대부분은 이라크 재건(35억 달러), 아프가니스탄 재건(15억 달러),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지원(41억 달러) 등
 - 일본의 ODA는 131억 달러로 전년대비 51.2%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28%를 기록
 - 쓰나미 지원에 5.4억 달러, 총지출 기준 ODA 규모는 1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8.3% 증가(실질가치 기준)
 - EU DAC 회원국(15개국)의 ODA는 557억 달러로 전년대비 27.9%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44%에 달함
 - EU의 목표 ODA/GNI 비율(0.39%)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ODA 증가의 대부분은 채무구제를 위한 증여(147억 달러)가 차지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EU가 정한 국가별 최저 ODA/GNI 비율(0.33%)에 못 미쳐 이를 달성하기 위한 ODA 증대 노력이 필요
- 2005년에 대폭 확대된 ODA 규모는 향후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할 전망
- 2006년 및 2007년에는 채무구제 감소에 따라 ODA 규모가 다소 줄어들겠으나 2008년 이후에는 공여국들의 ODA 확대 약정 이행에 따라 점차 증가할 전망

2. 우리나라의 ODA 규모

- '05년 우리나라 ODA는 744백만 달러(잠정치)로 전년대비 75.7% 증가
- 양자간 ODA는 전년대비 38.0% 증가한 457백만 달러
 - 양자간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등 증여가 315백만 달러(6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지원은 141백만 달러(31%) 수준
 - 다자간 ODA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10.2% 증가한 287백만 달러
 - '05년중 IDB 가입에 따른 출연·출자금 81.2백만 달러 납입 및 IDA 출자금 76백만 달러 증액

우리나라 ODA의 주요 구성(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성 항 목	2004년	2005년(잠정치)		
		금액	증감율(%)	비중(%)
ODA (A+B)	423.3	743.6	75.7	100.0
양자간 ODA (A)	330.8	456.5	38.0	61.4
무상원조	212.1	315.4	48.7	42.4
그중: KOICA	174.6	200.6	14.9	27.0
유상원조(EDCF)	118.7	141.1	18.9	19.0
다자간 ODA (B)	92.6	287.2	210.2	38.6
그중: 한국은행	62.5	239.9	283.8	33.2
ODA/GNI(%)	0.06	0.09	-	-

-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3% 포인트 증가한 0.09%이고 대북지원(433백만 달러)을 포함할 경우 0.15%
 - 대북지원은 민족 내부거래 인정하여 ODA통계에서 제외되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DAC 22개 회원국 평균(0.3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국민 1인당 ODA 부담은 15.2달러 수준
-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42.2% 증가한 115백만 달러로 양자간 원조의 25.2%를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전년대비 202.6% 증가한 33백만 달러를 기록
-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50백만 달러로 양자간 원조 중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부(50%)와 KOICA(49%)가 이를 전담
- 쓰나미 피해복구에 KOICA 등 5개 기관이 24백만 달러 지원

붙임 :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

자 료 : 1. OECD DAC, 'Aid flows top USD 100 billion in 2005', 2006.4
2. Korea's Advance Questionnaire on ODA, 2006.3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노르웨이	2,199	0.87	2,775	0.93
스웨덴	2,722	0.78	3,280	0.92
룩셈부르크	236	0.83	264	0.87
네덜란드	4,204	0.73	5,131	0.82
덴마크	2,037	0.85	2,107	0.81
벨기에	1,463	0.41	1,975	0.53
오스트리아	678	0.23	1,552	0.52
영국	7,883	0.36	10,754	0.48
핀란드	680	0.35	897	0.47
프랑스	8,473	0.41	10,059	0.47
스위스	1,545	0.41	1,771	0.44
아일랜드	607	0.39	692	0.41
독일	7,534	0.28	9,915	0.35
캐나다	2,599	0.27	3,731	0.34
이탈리아	2,462	0.15	5,053	0.29
스페인	2,437	0.24	3,123	0.29
일본	8,922	0.19	13,101	0.28
뉴질랜드	212	0.23	274	0.27
호주	1,460	0.25	1,666	0.25
그리스	465	0.23	535	0.24
미국	19,705	0.17	27,457	0.22
포르투갈	1,031	0.63	367	0.21
합계	79,553	0.26	106,477	0.33
우리나라	423	0.06	744	0.09

목차보기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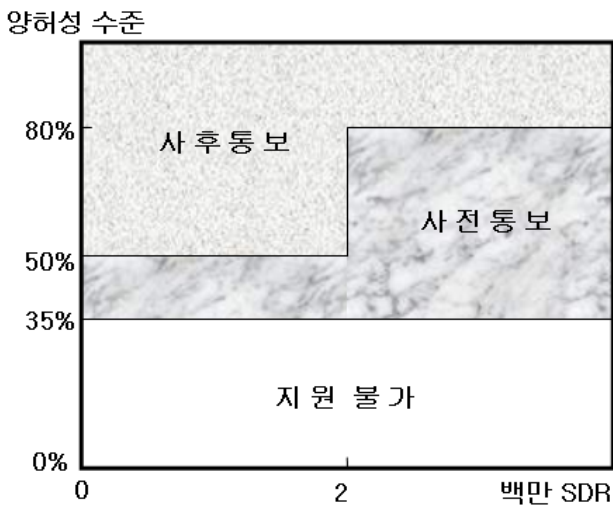
원조사업의 OECD에 대한 통보의 종류

1.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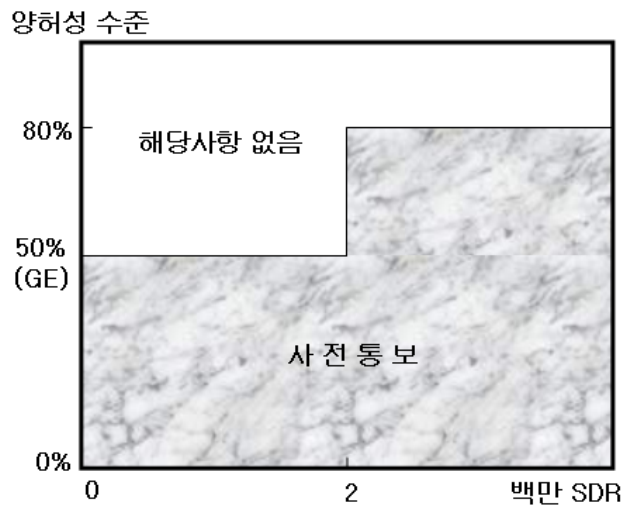
□ 통보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무역관련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미만
	언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증여율이 50% 미만
사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이상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이상
	언타이드 원조	해당사항 없음

〈 타이드 원조 〉



〈 언타이드 원조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입찰마감일 또는 원조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영업일 이전에 통보
- 사후통보 : 약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모두 동일한 통보양식을 사용하여 건별로 통보
 - 기본정보, 수입자/차주/보증인 정보, 수출되는 재화용역 및 프로젝트관련 정보, 금융조건, 원조형태, 양허성 수준, 차등할인율(DDR)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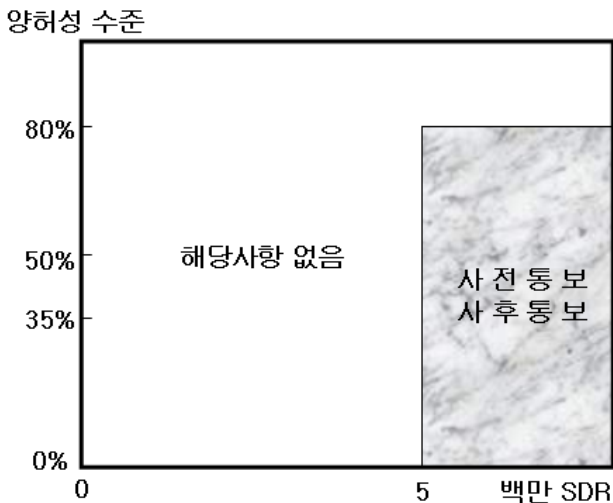
2.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통보 대상 :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인 언타이드 차관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 포함)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언타이드 차관	지원금액이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기술협력	13만 SDR 이상의 투자연계기술협력(IRTC)*

* 투자연계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원(FEED), 건축엔지니어링지원(A&E),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을 말하며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 또는 수행과는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는 구분됨

〈 언타이드 차관 〉



〈 기술협력(IRTC)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건별로 입찰개시일 **30일전까지** 통보
- 사후통보 : 직전년도 사전통보 건의 **입찰결과**를 집계하여 차년도에 일괄 통보(연1회)

□ **통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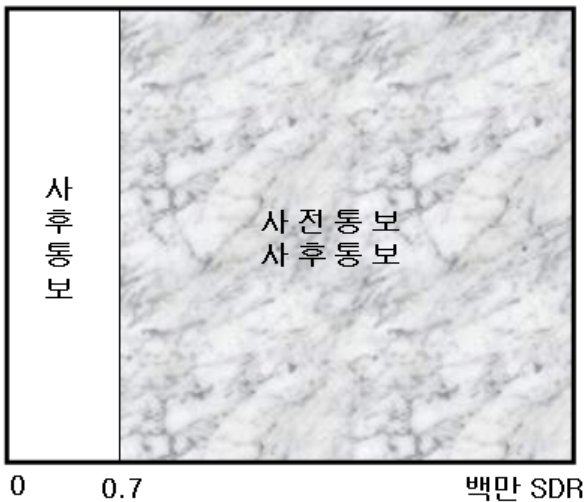
- 사전통보 : 프로젝트 금액, 공여국, 수원국, 프로젝트 개요, 입찰정보, 구매주관기관, 기술협력, 차관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사후통보 : 사전통보번호, 공여국, 수원국,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

3.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에 따른 통보

□ **통보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언타이드 원조	최빈국에 대한 70만 SDR 이상의 언타이드 원조(투자연계기술협력(IRTC)의 경우는 13만 SDR 이상)
사후통보	언타이드 원조	최빈국에 대한 모든 언타이드 원조(투자연계기술협력(IRTC) 포함)

〈 최빈국일원 언타이드 원조 〉



〈 최빈국일원 기술협력(IRTC)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건별로 입찰개시일 **30일전까지** 통보
- 사후통보 : 직전년도 사업의 **입찰결과**를 집계하여 차년도에 일괄 통보(연1회)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 공여국, 수원국, 프로젝트 개요, 부문, 프로젝트 금액, 입찰기간, 구매 주관기관 등
- 사후통보 :
 - 사전통보된 건은 개별사업의 공여국, 수원국,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수주결과를 모두 집계하여 보고
 - 사전통보되지 않은 건(소액 언타이드 원조)²²⁾은 사업수주 건수 및 금액을 공여국, 타 DAC 회원국, 개도국, 최빈국 등으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보고

자 료 : 1.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OECD, 2005.12
2. 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OECD, 2005.11
3.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OECD, 2006.3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22) 최빈국에 대한 70만 SDR 미만의 언타이드 원조(IRTC의 경우는 13만 SDR 미만)